



경기도의회 제393회(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 재도전학교 운영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 경기도지사 제출
제39번

2026. 9. 7.(월)

여 성 가 족 평 생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 창 희

경기 재도전학교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요구이유

- 취·창업 실패로 상처 입고 구직 단념, 직업교육 거부 등 사회적으로 소외
위기에 처한 도민의 상처회복, 멘탈강화 등 자신감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추
진을 위해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 이에, 본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하
기 위해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경기 재도전학교 운영

나. 위탁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8조(사업) 및 제28조(위탁운영)
-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제7조(도의회 동의)

2) 필요성

- 취·창업 실패로 상처입은 도민을 대상으로 전문 직업교육이 아닌 심리
치유·용기부여를 통한 실패 극복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사무에 해당하여 위탁 추진
- 취·창업 실패로 상처입고 직업교육의 문턱을 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도민을 일으켜 세우고 직업교육의 문턱까지 인도하는 과정은 심리치유와
인문학적 접근에 강한 평생직업교육의 분야로 전문성 있는 추진을 위해
공공성을 가진 전문기관(인력)의 수행 필요

다. 위탁사무 내용

- 참여자 모집 및 선발, 커리큘럼 설계와 강사진 구성 등 교육기획
- 취·창업 연계 공공기관 맞춤형 정책 발굴, 기관관 협업 추진
- 교육생 간 네트워크 활성화, 교육 수료 후 취·창업 현황 추적관리
- 프로그램 홍보 및 취·창업 연계 정책 지속 지원 등

라. 소요예산 및 재원 : 950백만원 / 도비 100%

마. 예산 산출근거

- 심리치유, 실패원인분석, 전문가 맞춤형 코칭 등 교육(6회) 530백만원
- 명사특강, 도민참여 실패경험 공유 등 토크콘서트(4회) 200백만원
- 세부과정 기획 및 운영, 홍보, 사후관리, 위탁수수료 등 220백만원

바. 수탁기관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사. 위탁예정 기간 : '27.01.01. ~ '29.12.31.(3년)

아.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계약

자. 2026년 제4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 적정('26.07.31.)

3. 검토의견

■ 동의안 제출취지

- 본 동의안은 취·창업 실패로 상처를 입고 구직 단념, 직업교육 거부 등 사회적 소외 위기에 처한 도민을 대상으로 상처 회복 및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기 재도전학교 운영' 사무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계속 위탁하고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임.
-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3년)이며, 소요 예산은 950백만원(도비 100%)임.

■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8조(사업)와 제28조(위탁운영)는 도지사가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진흥원에 우선하여 위

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본 사업은 단순한 직업훈련에 앞서 취·창업 실패로 심리적 상처를 입고 사회적 단절 위기에 놓인 도민을 대상으로 심리치유, 실패원인분석, 맞춤형 코칭을 제공하여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직업교육 문턱까지 이끄는 사전 단계의 평생교육적 성격을 띠고 있음.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평생직업교육 및 심리회복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전문성과 유관기관 협력 경험을 갖추고 있는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정함.
-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제5조에 따라 해당 사무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목적 및 주요 사업과 부합하며, 공공기관 위탁의 적정성을 살펴보았을 때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
- 아울러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2026. 7. 31. 적정 의결)를 거쳤으며, 같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음.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 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② 삭제 <2025. 11. 11.>

③ 삭제 <2025. 11. 11.>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4. 23.>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8.>

[시행일: 2027. 5. 12.] 제5조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8조(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3.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개정 2019.8.6.>

4.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및 평가

5.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

6. 삭제 <2023.5.17.>

7. 도지사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8. 캠퍼스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진행 [신설 2016.9.29.] <개정 2019.8.6.>

9. 민주시민 교육사업 [신설 2019.10.1.]

10. 평생교육 강사 관리 및 일자리 연계 사업 [신설 2020.11.12.]

11. 그 밖에 진흥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진흥원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20.]

제28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평생교육사업 및 캠퍼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진흥원 또는 평생교육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5.1.] <개정 2017.6.13., 2019.8.6.>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평생교육사업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흥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13.]

③ 사업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5.5.1.] <개정 2017.6.13., 2020.1.13., 2024.12.31.>

[제목개정 2015.5.1.]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제5조(공공기관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가 사무를 위탁·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출자·출연기관 설립 목적 부합 여부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지속성
3. 수탁·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4. 성과 측정의 용이성
5.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6. 사무의 수행을 공공기관 위탁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성
7. 그 밖에 위탁·대행사무에 필요한 사항

제7조(도의회 동의) ① 도지사가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대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 공기관위탁을 통한 운영 타당성(지속 필요성) 검토

- 본 사무는 참여자 모집 및 선발, 커리큘럼 설계와 전문 강사진 구성 등 교육 기획부터 도내 취·창업 공공기관과의 맞춤형 정책 연계, 수료 후 사후관리까지 유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전문적인 전담 운영 기관이 요구됨.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2025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여 총 4기 200명 전원 수료(수료율 100%), 평균 6.3: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경기도일자리재단, 시장상권진흥원·경제과학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등과의 맞춤형 정책 연계를 통해 2025년 수료생의 48.0%가 취·창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도출하였음.
- 무엇보다 기존 2개년('25~'26년)간 축적된 교육 운영 노하우와 유관기관 협력 인프라를 바탕으로 사무를 연속 추진함으로써 행정 인프라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탁의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탁 사무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첫째, 동의안의 사업 대상은 취·창업 실패로 상처 입고 구직 단념이나 직업교육 거부 등 사회적으로 소외 위기에 처한 도민으로 명시되어 있음. 사업의 본래 취지가 직업교육의 문턱조차 넘기 힘들어하는 소외 위기 도민의 심리 치유와 재도전 지원에 있는 만큼, 단순한 일반 참여 희망자가 아닌 실질적 도움이 절실한 위기 대상자가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선발 지표를 수립하고 맞춤형 발굴 체계를 사전에 확립할 필요가 있음.
- 둘째, 950백만원의 예산 중 '교육 운영(6회, 5.3억 원)' 및 '토크콘서트

(4회, 2억 원)' 등 집체·행사성 예산 비중이 76.8%로 높게 책정되어 있음. 심각한 심리적 위축과 단절을 겪는 대상자에게 일회성 대중 강연은 실질적 회복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행사성 경비를 조정하여 1:1 맞춤형 심층 코칭 및 소그룹 멘토링 중심으로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주요 위탁사무에 포함된 '교육생 간 네트워크 활성화'와 '교육 수료 후 취·창업 현황 추적관리'가 단순 일회성 연락망 공유나 단기 취·창업률 (48.0%) 집계에 그쳐서는 안 됨.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겪었던 대상자 특성상 재도전 과정에서 2차 실패나 재은둔 위험이 높은 만큼, 수료생 자조모임 기반의 상호 지지망을 상시화하고 수료 후 최소 1년 이상 고용 유지 현황과 경제적 자립 상태를 정기 추적·관리하는 사후 환류 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참고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발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2. 재난, 재해 대응 등을 위해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3.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위탁·대행사무명, 수탁·대행기관 등 위탁·대행 관련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무

제5조(공공기관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가 사무를 위탁·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출자·출연기관 설립 목적 부합 여부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지속성
3. 수탁·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4. 성과 측정의 용이성
5.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6. 사무의 수행을 공공기관 위탁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성
7. 그 밖에 위탁·대행사무에 필요한 사항

제6조(관리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위탁·대행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공기관위탁·대행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경기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수행한다.

제7조(도의회 동의) ① 도지사가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대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대행사무명
2. 위탁·대행사무의 추진근거 및 필요성(계속위탁·대행의 필요성 포함)
3. 위탁·대행사무 내용
4. 위탁·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대행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제5조에 따른 위탁·대행사무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9. 그 밖에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위탁·대행기간이 만료되어 사무를 다시 위탁·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6년이 경과한 사무를 계속 위탁·대행하려는 경우에는 6년 경과 후 첫 계약 시 다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도지사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무를 다시 위탁·대행하는 경우에는 성과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무의 위탁·대행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추정실적이 포함된 성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공공기관위탁·대행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8조(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도지사는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출자·출연기관 설립 목적과의 부합 여부
2. 위탁·대행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3.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4. 수탁·대행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